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증가하는 정책 홍보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·소통 필요성 증대로 대변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,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7. 11. ~ 7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나등급”을 “가등급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8항제3호 중 “국가균형발전사업”을 “지역균형발전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56조제1항 중 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”를 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대변인) ① 대변인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<u>나등급</u> 으로 한다.	제2조(대변인) ① ----- ----- ----- ---- <u>가등급</u> -----.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지방자치균형발전실) ① ~ ⑱ (생략)	제11조(지방자치균형발전실) ① ~ ⑱ (현행과 같음)
⑱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국가균형발전사업</u> 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	3. <u>지역균형발전사업</u> ----- -----
4. ~ 6. (생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7. 「 <u>국가균형발전 특별법</u> 」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·지원 등 제도의 운영 및 연구·개선	7. 「 <u>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</u> 」----- ----- --
8. ~ 15. (생략)	8. ~ 15. (현행과 같음)
⑲ ~ ㉓ (생략)	⑲ ~ ㉓ (현행과 같음)
제56조(한시정원) 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<u>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</u> 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	제56조(한시정원) ① ----- ----- <u>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</u> ----- -----

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	-----
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.	----- ----- -----.
② 삭제	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